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안

##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업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었고 앞으로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사후적으로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거대유통자본의 힘을 빌린 대형마트와 SSM의 끝없는 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유통업분야의 중소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면서 사업조정을 신청해 불안한 생계를 이어 가보려 했지만 사업조정의 결과는 ‘상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대형유통업체에게는 경미했고 그나마 대형유통업체가 권고내용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이를 막을 방법도 없음.

이에,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사업조정신청을 위해 중소상인들이 생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현행 상생법은 사업조정의 결과 권고와 권고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단계적으로 거쳐 대기업등과 중소상인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기업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공표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 등과 중소상인의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업조정신청 기한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이후 9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일시정지 권고는 인수·개시·확장 이전에만 가능하다보니 대기업 등은 일단 개시부터 하고보자는 '기습' 개시를 일삼고 있어 분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인수·개시·확장 이후에도 일시정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등의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게 해서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권한을 중소기업청장이 갖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 대형유통점과 주변 상권 또는 주민의 관계, 주변환경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만 부여하고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지정 신청권이 없어 위 업종지정이 협소하다보니 같은 중소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 신청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는 문제를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위 업종 지정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정 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 . .  
발의자 : . . . (인)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업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었고 앞으로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사후적으로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거대유통자본의 힘을 빌린 대형마트와 SSM의 끝없는 확장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유통업분야의 중소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면서 사업조정을 신청해 불안한 생계를 이어 가보려 했지만 사업조정의 결과는 '상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대형유통업체에게는 경미했고 그나마 대형유통업체가 권고내용

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이를 막을 방법도 없음.

이에,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사업조정신청을 위해 중소상인들이 생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현행 상생법은 사업조정의 결과 권고와 권고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단계적으로 거쳐 대기업등과 중소상인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기업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공표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 등과 중소상인의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업조정신청 기한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이후 9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일시정지 권고는 인수·개시·확장 이전에만 가능하다보니 대기업 등은 일단 개시부터 하고보자는 ‘기습’ 개시를 일삼고 있어 분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인수·개시·확장 이후에도 일시정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등의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게 해서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유통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권한을 중소기업청장이 갖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 대형유통점과 주변 상권 또는 주민의 관계, 주변환경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만 부여하고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지정 신청권이 없어 위 업종지정이 협소하다보니 같은 중소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조정 신청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는 문제를 중소기업자단체 등에게 위 업종 지정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정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 완화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신청 가능(안 제32조 제1항 단서)

#### 나. 사업조정 신청 기한 연장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단서).

#### 다.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내용 불이행할 경우 동시에 권고내용 공표와 이행명령

대기업등이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대상이나 권고 내용을 공표하면서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 라.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이후에도 일시정지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전에 사업

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 제1항, 제2항)

마.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업종의 지정신청권을 중소기업자단체와 중소기업에 부여

중소기업청장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중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의견서의 접수, 통지, 권고·공표 및 명령과 그 철회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3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2항, 제3항)

바. 일시정지권고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 처벌 규정 신설(안 제41조 제2항 제4호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와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후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와 전조 제2항 단서의 기간내에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대기업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된 영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 및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
5.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 및 철회
6.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7.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6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8.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③ 전항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4조와 제34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④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제3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전향에서 정한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제2항에서 정한 권한외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현행 ③항과 동일

####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u>중소기업</u></p>	<p>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u>2개 이상의</u></p>

현 행	개 정 안
<p><u>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u> <u>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u> <u>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u> <u>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u> <u>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u> <u>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u> <u>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u> <u>정을 신청할 수 있다.</u></p>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u>90일</u> <u>이내에</u>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u>1년</u>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현 행	개 정 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u>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 할 수 있다.</u>	② 중소기업청장은 <u>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와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u>
③ 중소기업청장은 <u>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u>	③ 삭제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u>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u>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u>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u>

현 행	개 정 안
고할 수 있다.	<p>고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청  <u>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후</u>  <u>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u>  <u>또는 확장한 경우와 전조 제2</u>  <u>항 단서의 기간내에 사업조정</u>  <u>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대기업</u>  <u>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u>  <u>확장된 영업을 일시 정지하도</u>  <u>록 권고할 수 있다.</u></p>
<p>② 중소기업청장은 <u>제1항에 따른</u>  <u>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u>  <u>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u>  <u>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u>  <u>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u></p>	<p>② 중소기업청장은 <u>제1항에 따른</u>  <u>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그 권</u>  <u>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u>  <u>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u>  <u>공표 및 그 이행을 명할 수 있</u>  <u>다.</u></p>
<p>③ 생략</p> <p>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p>
	<p>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중소기업청장은 <u>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중소기업청장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시한 후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li> <li>2.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li> <li>3.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li> <li>4.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공표 및 명령</li> <li>5.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공표 및 철회</li> <li>6.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및 조사</li> <li>7.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li> </ol>

현 행	개 정 안
	<p>료에 관한 권한(제6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p>
	<p>8.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p> <p>③ 전항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4조와 제34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p> <p>④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⑤ 제3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청장에게 전항에서 정한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p>

현 행	개 정 안
	<p>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⑥ 중소기업청장은 <u>이 법에 따른 권한</u> 중 제2항에서 정한 <u>권한 외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③ 생략	⑦ 현행 ③항과 동일
제41조(벌칙)	제41조(벌칙)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 <u>제3항</u> 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 <u>제2항</u> 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 <u>제2항</u> 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